
2021 ~ 22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재무모델 자문용역
제안요청서

2021. 5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목 차

I.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 세부내용	1
II. 제안 안내사항	2
1. 제안서 작성방법	2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2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3
4. 제안서 평가	4
5. 사업자 선정	5
6. 기타 사항	5
7. 제안 관련 문의처	6
< 붙임 1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7
< 붙임 2 > 제안서 제출서류	9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0
【서식 2】 제안서 작성요령	11
【서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1
【서식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22

I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1 ~ 22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재무모델 자문용역
(자문사 선정)

2. 사업목적

- 재무모델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하여 해외사업 수익성 및 투자 적합성에 대한 예측 정확성 제고
- 외부 전문가의 재검증으로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 지원

3. 사업 세부내용

- (사업대상)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공사”)에서 의뢰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재무모델 관련 자문 제공
- (사업예산) 총 220,000,000원 (부가세 포함)
 - ※ 본 사업예산은 입찰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이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자문단가) 시간당 30만원 (부가세 별도, 회계사 경력 9년 이상 15년 미만 부장급 기준)
 - * 과업수행인력의 직급별 차등요율 적용 (경력 15년 이상 파트너급은 자문단가의 120%, 경력 3년 이상 9년 미만의 과장급은 자문단가의 80% 적용)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과업범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재무모델 자문
 - ※ 상세 과업내용은 「과업내용서」 확인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제안서 작성양식<서식 2> 참조)
- 제안서는 A4용지 20페이지 내외(표지 및 목차 제외)로 글자
크기 13포인트로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 단, 표 안의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사용 가능
- 제안서는 무선제본하여 12부 제출
- 제안서 본문 외 실적, 인력 등에 관한 각종 증빙서류 및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첨부자료는
별책으로 무선제본하여 2부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공사는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모두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 참가 자격 (동시충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
 -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4)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공문으로 직접 제출
 - * 전자파일 형태로도 추가 제출(contract@kindkorea.or.kr)
 -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1. 7. 6. (화) 11:00까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50층

4.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만으로 함

- 기술능력평가는 공사가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1」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실시

평가 기본 원칙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평가 절차

-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는 위원별로 [붙임1]의 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함
- 위원은 평가항목별로 절대평가를 실시함
- 종합점수는 평가위원별로 각 제안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산출하고, 평가위원별 최고 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함
- 종합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을 준용함
- 평가위원회의 기술능력평가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자문프로세스와 분석능력,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과업 수행 조직의 전문성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위 항의 협상순위에 따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5. 사업자 선정

- 협상적격자 중 협상이 성립된 3개 제안업체를 선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순번제로 용역기간 중 업무를 부여함
 - * 이해관계상충 등의 문제로 해당 순번의 업체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순번의 업체에 업무를 부여함

6. 기타 사항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보는 공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됨

청렴 계약이행 준수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기타 동 제안서에 없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추진함

7. 제안관련 문의처

사업, 제안문의 : 금융편드실 금융팀 (02-6746-7398)

입찰, 계약문의 : 경영지원실 재무계약팀 (02-6746-7462)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지표 >

구 분	평 가 항 목(배점)	배점
1. 계량평가* (20점)	① 전문인력 적정성 (10) - 법인 내 자문인력 수(5) - 자문인력 경력 (5) * 세무·tax, 채용조달, 투자구조, 재무분석 등	10
	② 신청기업의 경영상태 (10) - 최근 3년간 연평균 자기자본 순이익률(5) - 최근 3년간 연평균 유동비율(5)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기준	10
2. 비계량평가 (80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 본건 자문용역과 자문실적간의 연계성(10) - 주요 용역실적과 공사 투입인력간의 연계성 (10)	20
	② 과업 수행 조직 - 공사 투입인력의 편성 및 관리계획(10)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10)	20
	③ 역량평가 - 재무모델 자문 프로세스의 우수성(10) - 유형별 투자타당성 분석 능력(10)	20
	④ 과업수행 계획 - 공사의 사업 및 해외인프라투자동향에 대한 이해 (10) - 해외네트워크와의 협력계획(10)	20

□ 계량평가 세부평가기준

① 전문인력 적정성

- (법인 내 자문인력 수) 공고일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급한 회계법인 확인원 상 재직 중인 공인회계사 수로 평가 (기준일: 공고일)

분류	100명 이상	99 ~ 90명	89 ~ 70명	69 ~ 50명	50명 미만
평점(점)	5	4.5	4	3.5	3

- (자문인력 경력) 각 투입인력 경력기간 기준 평점의 산술평균 (5인 이상 제출 시 경력 기준 상위 5인 계산)

분류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평점(점)	5	4.5	4	3.5	3

② 신청기업의 경영상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기준 연평균 자기 자본 순이익률) 연도별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의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분류	15%이상	12%이상	9%이상	6%이상	3%미만
평점(점)	5	4.5	4	3.5	3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기준 연평균 유동 비율) 연도별 유동비율 (재무제표상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분류	150%이상	130%이상	110%이상	90%이상	70%미만
평점(점)	5	4.5	4	3.5	3

□ 비계량평가 세부평가기준

- 용역수행 능력·적합성 등의 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비율로 평가 (매우우수 : ⑩, 우수 : ⑧, 보통 : ⑥, 미흡 : ④)

[붙임 2] 제안서 제출서류

제출서류목록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입찰 참가자격 증명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 홈페이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제안서	1) 제안서 본문	10부	서식 2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2) 증빙서류 -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한국공인회계사회 발급 회계법인확인원 - 참여인력의 이력사항(양식6)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등 - 국세청 발급 최근 3개년도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필요시)	2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제안서 본문과 별책으로 제본
기타서류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3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1부	서식 4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모자이크 처리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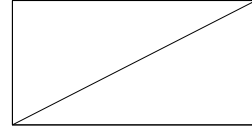
【서식 2】

제안서 작성요령

구 분	내 용	양 식	비고
1. 표지	1. 과업제안서 표지	붙임 양식 1	
2. 회사소개서	2. 회사소개서 *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 첨부	붙임 양식 2,3	계량
3. 용역수행실적	3. 용역수행실적 - 용역수행실적 및 해당 실적의 본 용역과의 연계성 - 주요용역실적과 공사투입인력간 연계성 * 실적 증빙자료 또는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첨부	붙임 양식 4	비 계 량
4. 과업수행계획	4-1. 과업수행 조직 - 공사 투입인력의 구성, 경력 및 투입인력 관리계획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 등) - 투입인력 현황	붙임 양식 5 붙임 양식 6	
	4-2. 역량평가 - 자문업무에 대한 내부업무흐름도, 의사결정 단계별 역할과 책임, 자문업무의 다양성 등에 대해 기재 - 전력/교통/도시개발/플랜트 등 자산 유형별 타당성 분석 방안	-	
	4-3. 과업수행계획 - 자문수행계획 및 실행방법, 제안회사의 장점 및 경쟁우위 - 글로벌 업무 제휴 현황 및 해당 기관의 역량, 자문실적, 제휴기관 활용방안	-	
5. 기타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제안업체의 별도 제안사항 등	-	
6. 첨부자료 ^{주1)}	5. 1~5번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기관 신용평가등급, 기관 실적증명서, 분야별 책임기술자 실적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참여인력 유사사업 실적증명서 등) 및 기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주1) 첨부자료는 본문 내용에 참조될 수 있도록 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제안서 본문 뒤에 일괄 첨부(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안서 본문과 별책으로 작성 가능)

<양식 1>



과업제안서

용역명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재무모델 자문용역

기관명 : (인)

<양식 2>

회 사 소 개 서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주 소			
4. 대표 전화번호			
5. 설립연도	년 월 일		
6. 주요연혁			
7. 신용평가등급	2018년	2019년	2020년
8. 자문인력 수			
9.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주) 8. 자문인력 수 기재 후 증빙서류(한국공인회계사회 인증자료 등) 별도 첨부

<양식 3>

재무제표 개요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총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기자본			
총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당기 순이익			
자기자본순이익률 (최근 3년 평균 : %)			
유동비율 (최근 3년 평균 : %)			

※ 재무제표 개요 및 매출액 관련 증빙할 수 있는 서류(표준재무제표 증명 등) 별도 제출

용역 (기관) 수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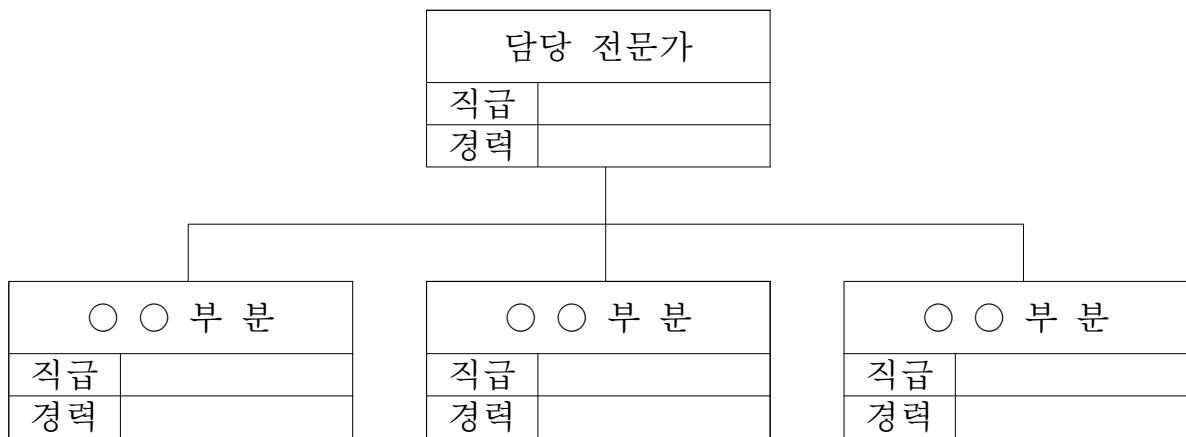
건 명	개 요	계약금액	발주처	계약일/ 준공일	비 고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한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사업의 재무모델 수립/검토 및 조세 자문 관련 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
2.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적용
4. 실적증명서 별도제출 또는 비고란에 발주처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1. 자문 전담팀 구성도

○ 담당 전문가 외 명



※ 위의 구성도는 예시이며, 과업내용에 따라 제안사별 자체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하여 작성 가능

2. 참여인력 요약

직급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전공 및 경력		
				담당분야	전공	경력
파트너급	홍길동	00.00.00.				년 월
부장급						
과장급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전공	전공 (학위 :)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학위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주) 1. 책임자급 및 전담인력을 제외한 비전담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요약기재 가능
2. 유사업무 수행경험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한 국내·외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타당성조사(재무, 법률, 기술 등) 수행 경험을 말함
3. 발주처 또는 실적증빙기관이 발행한 유사업무 실적증명서 별도 제출 또는 비고란에 발주처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다.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당사 및 국토교통부(소속기관 포함)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공사 및 국토교통부(산하기관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

조세포탈 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1.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